보 고 사 항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

1.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기타 일반안건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2000. 11. 4

(화순군의회 공고 제2000-8호)

<공고내용>

- 집회일시 : 2000. 11. 10 (金) 10:00
-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관계공무원 변동상황 보고

(2000. 11. 2 자)

직	성 명	신 임	현 임	비고
지방행정사무관	구 복 규	문화관광과장	남 면 장	
〃	김 충 식	남 면 장	문화관광과장	

□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

○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공 포 일 자 : 2000. 10. 24
- 공 포 번 호 : 화순군의회 규칙 제10호o

○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7호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8호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49호

○ **화순군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50호

○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51호

○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52호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53호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54호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55호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2000. 10. 23 집행부이송

- 공 포 일 자 : 2000. 11. 10
- 공 포 번 호 : 화순군조례 1656호

□각종 의안 제안상황 보고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00. 11. 4 의원발의

- 발의자 :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회 기 : 2000. 11. 10. ~ 11. 17 (8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0. 11. 4 의원발의

- 발의자 : 김성인 의회운영위원장 외 3
- 출석요구내용 : 별 첨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1. 8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제안이유

·의회의원 상해 보상 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않는 항목을 개정함으로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의원 상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무직 공무원 1인" 을 "의무직 공무공무원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으로 개정 (안 제6조)

※ 2000. 11. 9.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회부

○**2000 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0. 11. 2 군수제출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예산편성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132,837	118,067	14,770	증 12.5 %
일반회계	119,081	104,911	14,170	13.5
특별회계	13,756	13,156	600	4.6

○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별 첨

※ 2000. 11. 6.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00. 11. 8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주 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활동기간 : 2000. 11. 10 ~ 2000. 11. 17 (8일간)

· 구성인원 : 7 명

—제안이유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되어있어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제안함.

○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1. 4 화순군수

—제안이유

· 상위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조문을 정비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할시 특례규정에 의하여 재축·개축·증축에 한해 가능한 것을 용도변경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제5조)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2조 내지 제34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제35조 내지 제38조),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제51조), 지역별 건폐율 차등적용(제56조), 지역별 용적율 차등적용 및 완화적용(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이 상위법에서 폐지되어 조항 삭제

·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위법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완화 부과토록 신설 (제67조의2)

· 전통사찰 주변에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해 지역을 지정 건축허가 일부 제한토록 신설(제67조의 3)

※ 2000. 11. 6. 총무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1. 화순군수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간소화 및 민원 편익차원에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주요골자

·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 확대적용(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사업 기본법에 부합) ⇒ (제8조)

·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지정일 이내에 미납사유 제출시 5일 이내의 기간연장 ⇒ (제11조)

· 수용가 계량기 설치 위치를 수용가와 협의하여 설치 ⇒ (제17조)

·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23조)

° 지진 및 홍수등의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 전시 상수도시설의 피해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 관파열 및 배수지 청소등으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

° 오염수 발생 및 기타 상수도 관리상 급수정지 및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

※ 2000. 11. 6. 총무운영위원회 회부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1. 군수제출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태료 징수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 법률인 도로법의 위임 근거를 일탈하여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

※ 2000. 11. 6. 산업·건설위원회 회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1. 4 군수제출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 개선코자 함.

-주요골자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 완료후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

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 (안 제7조 제2항)

-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 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함(안 제10조 제1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내용변경 및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 조례 제16조와 중복된 부분이 있음으로 중복 규제된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1항)
-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보조금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교부결정시 검토할 부분 삭제 (안 제17조)

※ 2000. 11. 6. 총무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1. 4 군수제출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증채무관리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 개선코자 함.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 군수는 주채무의 변

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보증채무 이행절차를 밟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청구서를 받은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로 하고자 함 (안 제7조 제2항)

※ 2000. 11. 6. 총무운영위원회 회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 11. 4 군수제출

-제안이유

· 화순군물품관리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은 당해물품의 취득단가를 기준 하한선으로 정하여 중앙 및 타·도·군등에 소요조회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낮아 불용결정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골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단위당 가격기준 완화

° 중앙각부처 : 취득단가 10백만원이상 → 취득단가 20백만원이상

° 타시·도 : 취득단가 10백만원이상 → 취득단가 20백만원이상

° 도내(시·군포함) : 취득단가 5백만원이상→취득단가 20백만원이상

· 불용 물품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 물품당 가격 단가 기준 완화

° 장부상 취득가격 10백만원이상→장부상 취득가격 20백만원 이상

※ 2000. 11. 6. 총무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2000. 11. 군수제출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 및 이로 인한 지가 상승과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주요골자

· 위반행위 조사·확인(안 제2조)

·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조)

°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자 :100만원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자

· 2년초과 ~3년이내 : 토지가격의 100분의 8 (한도액 200만원)

· 3년초과 :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한도액 200만원)

°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한도액 200만원)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한도액 200만원)

· 처분예고(안 제4조)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를 통지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2000. 11. 6. 총무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안**

— 2000. 11. 4 군수제출

-제안이유

부동산중개업 등록제도는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주요골자

·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부여

· 과태료 처분 통지 등(안 제4조)

° 위반행위 조사, 확인

° 과태료 납부기한 :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독촉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 2000. 11. 6. 총무운영위원회 회부

○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2000. 11. 4 군수제출

-제안이유

농촌에 정착할 우수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우수학생 4-H회원

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제정되었으나, 국비 지원이 없어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으며, 90년부터 전라남도 4-H후원회에서 매년 1~2명씩을 추천받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화순군4-H회장학금지급조례를 전문 폐지

※ 2000. 11. 6. 산업·건설운영위원회 회부

○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00. 11. 4 군수제출

-제안이유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대신리 지석묘 구역내 선사유적지의 공인돌 밀집지역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물발굴 및 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매입계획

구 분	위 치	필지수	면 적	취득예정가격	비 고
취 득	계	7	5,968㎡	52,434	
	도곡면 효산리	3	2,730㎡	18,252	
	춘양면 대신리	4	3,238㎡	34,182	

※ 2000. 11. 6. 총무위원회 회부